

당규 제 호

사회민주당 당규 제2호 당비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2호 당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를 “일반당비, 특별당비 및 직책당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특별당비”를 “특별당비 및 직책당비”로 한다.

제9조 중 “대표단 회의가 정하는 직책당비”를 “직책당비”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당규 시행 전에 대표단회의가 정한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최고위원회가 이를 새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구분) 당비는 <u>일반당비와 특별당비</u> 로 구분한다.	제2조 (구분) ----- <u>일반당비, 특별당비 및 직책당비</u> -----.
제3장 <u>특별당비</u>	제3장 <u>특별당비 및 직책당비</u>
제9조 (직책당비)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은 <u>대표단 회의가 정하는 직책당비</u> 를 납부해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9조 (직책당비) ----- -- <u>직책당비</u> ----- ----- <u>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u>
<u><신설></u>	<u>제4장 보칙</u>

사회민주당 당규 제3호 당원총투표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3호 당원총투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대표단”을 “최고위원회”로, “제12조”를 “제8조”로,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대표단”을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6 조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 ②항”을 “제9조제②항”으로, “중앙선거관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를 “온라인투표”로 한다.

제19조제4항 후단 중 “제③항의의”를 “제③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당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당원총투표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u>대표단</u>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헌 제12조(당원총투표) 제②항 제3호에 따라 <u>대표단회의</u> 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총투표를 말한다.	제2조 (당원총투표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최고위원회</u> ----- 제8조----- ----- <u>최고위원회</u> ----- ----- -----.
제6조 (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①·② (생 략) ③ <u>대표단</u>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최고위원회</u> ----- ----- -----.
제11조 (투표인명부 작성) ① (생 략)	제11조 (투표인명부 작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 (투표일) 당원총투표의 투표일은 제 ②항의 공고일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u>중앙선거관위원회</u> 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2조 (투표일) ----- 제9조제②항-----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
제13조 (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투표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u>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u> 의 방법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중앙선	제13조 (투표방법 등) ① ----- ----- <u>온라인투표</u> ----- ----- -----.

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생 략) 제19조 (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① ~ ③ (생 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②항 및 제③항의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③항의 ----- -----. ⑤ (현행과 같음)
---	--

사회민주당 당규 제4호 전국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4호 전국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지명직”을 “임명직”으로, “지명할”을 “임명할”로 한다.

부 칙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u>지명직</u> 전국위원의 수는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장애, 여성, 청년, 지역의 비율을 고려하여 <u>지명할</u> 수 있다.	제2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임명직</u> ----- ----- ----- <u>임명할</u> -----.

사회민주당 당규 제5호 집행기구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5호 집행기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당대표와 부대표”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을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표 3인은”을 “최고위원 2인은 당대표와 분리하여”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를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규 제9호 제43조에 따라 후보자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충원은 당헌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임명직 최고위원) 당대표는 당헌 제13조 제⑤항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직 최고위원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의 제목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궐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궐위 또는 유고”를 “궐위”로 한다.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새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의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의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를 “전국위원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광역시·도당위원장”을 “당헌 제9조 제⑤항과 당규 제4호 제3조에 따른 절차 또는 광역시·도당위원장”으로 한다.

①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비상대책기구의 장을 선출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최고위원회의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재적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부문위원회 등의 사고를 판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당대표의”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의”로, “당대표가”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최고위원회는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사고를 판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대표”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① 당무 처리에 필요한 처무규칙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으로, “원대표”를 “원내대표”로, “실장을”을 “실장 등 당무 수행을 위하여 임명되는 당직자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당헌 또는 다른 당규에서 임면·인준 절차를 별도로 정한 정무직 당직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③ 사무부총장과 사무총국 각 부서의 실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면한다.
- ④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면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임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개정규정은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전 처무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일 당시 중전 제14조에 따라 제정되거나 승인되어 시행 중인 처무규칙과 내부규칙은 이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이를 새로 정하거나 승인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장 당대표와 부대표</u>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생략) ② 선출직 부대표 3인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 (지명직 부대표) ①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선출직 부대표 3인 외에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지명직 부대표를 지명할 경우,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 제4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①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u>제2장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u> 제2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최고위원 2인은 당대표와 분리하여</u> ----- <u>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u> -----. ③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규 제9호 제43조에 따라 후보자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충원은 당헌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임명직 최고위원) 당대표는 당헌 제13조 제⑤항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직 최고위원 1인을 임명한다. 제4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궐위 등)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새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의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 또는 유고되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역시·도당위원장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생략)

<신 설>

제10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① (생략)

② 부문위원회 등은 당대표가 설치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생략)

<신 설>

제11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① (생략)

②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의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 최고위원----- 궐위-----

-.

제5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비상대책기구의 장을 선출한다.

② ----- 전국위원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헌 제9조 제⑤항과 당규 제4호 제3조에 따른 절차 또는 광역시·도당위원장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최고위원회의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재적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
-----.

③ (현행과 같음)

④ 최고위원회는 부문위원회 등의 사고를 판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와 본부는 <u>당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u>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u>당대표가 임면</u>한다. <신 설> 제14조 (내부규칙) ① <u>당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u> ② 기타 본 당규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u>당대표의 승인</u>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u>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u>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u>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의 -----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u> ③ <u>최고위원회는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사고를 판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u> 제14조 (내부규칙) ① <u>당무 처리에 필요한 처무규칙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u> ② ----- ----- <u>최고위원회</u>-----. 제15조(정무직 당직자) ① ----- ----- <u>위원장, ----- 원내대표</u>----- ----- - <u>실장 등 당무 수행을 위하여 임명되는 당직자들</u> ---. ② <u>당헌 또는 다른 당규에서 임면·인준 절차를 별도로 정한 정무직 당직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u> ③ <u>사무부총장과 사무총국 각 부서의 실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면한다.</u> ④ <u>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면한다.</u> ⑤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임면한다.</u>
---	--

사회민주당 당규 제6호 지역조직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6호 지역조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전국위원회”를 “최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중앙당 상무 집행위원회”를 “최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상무 집행위원회”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부 칙

본 당규는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생략)	제2조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은 중앙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② ----- ----- <u>최고위원회</u> ----- -----, ----- -----.
③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고당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2. <u>최고위원회</u> ----- ----- -----.
3.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수행한다.	3.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상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당무	다. <u>최고위원회</u> -----

사회민주당 당규 제7호 원내기구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7호 원내기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대책”을 “대책 및 원내 전략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4.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5.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또는 의안의 심의, 의결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7.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을 “최고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의원총회)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요 법안, 의안 심의, 의결 <신 설> 2. 원내 대책 심의, 의결 3. 원내대표 선출 4.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략)	제2조 (의원총회) ----- -----.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 대책 및 원내 전략의 --- <삭 제> 4.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5.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또는 의안의 심의, 의결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7.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3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보좌직원) ① (생략) ②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 (보좌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최고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 -----. ③·④ (현행과 같음)

당규 제 호

사회민주당 당규 제8호 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8호 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당대표”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부 칙

본 당규는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생략)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 <u>최고위원회</u> 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대표단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 ----- - <u>최고위원회</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징계관할)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항을 관할한다.	제10조 (징계관할)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당대표, 부대표,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2. ----- <u>최고위원</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징계청원) ① 당원은 본 당규 제11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시·도당위원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단회의에 청원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청원) ① ----- ----- ----- ----- ----- -- <u>최고위원회</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징계청원의 심사) ① 본 당규 제14조 제①항의 청원을 받은 대표단회의 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관할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청원심사위원회가 징계청원에 대한 징계안건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단, 본 당규 제17조 제①항의 직권조사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청원의 심사) ① ----- ----- <u>최고위원회</u>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 (징계결정의 확정시기) ① (생략)	제22조 (징계결정의 확정시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 (비상징계) ①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대표단회의</u>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7조 (포상) ① (생 략) ② 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전항에도 불구하고 <u>대표단회의</u>의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 (비상징계) ① ----- ----- ----- ----- <u>최고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최고위원</u> <u>회</u> -----.
---	--

사회민주당 당규 제9호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9호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당대표”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 집행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선거관리위원 등(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위원회의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본 당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제5항(중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③항과 제④항에 따른 선거관리 직무의 일시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은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사유로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상무 집행위원회에”를 “최고위원회의에”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상무 집행위원회에”를 “최고위원회의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무 집행위원회”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29조(후보자 등록) 제③항”을 “제2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부대표 선출선거 및”을 “최고위원 선출선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충원은 당헌 제13조제2항 및 당규 제5호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는 당헌 제13조제4항 및 당규 제5호 제4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62조 개정규정은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u>당대표</u> 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u>최고위원회</u> 의 협의를 거쳐 <u>당대표</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①·② (생략)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u>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 집행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u>	③ ----- ----- ----- <u>수</u> ----- ----- -----.
<u><신설></u>	④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등(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본 당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u>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⑤ ----- ----- ----- 다만, 제③항과 제④항에 따른 선거관리 직무의 일시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설></u>	⑥ <u>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은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사유로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② (생략)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② (현

략)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⑤ (생략)

제30조 (기탁금) ①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③ (생략)

제32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 규 제29조(후보자 등록) 제③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제36조 (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①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경선일 경우, 후보등록 결과 공고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그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② ~ ④ (생략)

행과 같음)

③ -----
----- 최고위원회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최고위원회 -----

----- 최고위원회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 (기탁금) ① ----- 최고위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기호추첨) -----
제29조 -----

-----.

제36조 (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① -----
----- 최고위원 선출선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u>부대표</u> ,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자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 <u>최고위원</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 (재선거) ① ~ ③ (생 략)	제59조 (재선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 는 정원의 충원은 당헌 제13조제2항 및 당규 제5호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제62조 (보궐선거) ① ~ ④ (생 략)	제62조 (보궐선거)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최고위 원의 궐위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는 당헌 제13 조제4항 및 당규 제5호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사회민주당 당규 제10호 정책연구소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10호 정책연구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8조의”를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를 각각 “제4조”로 한다.

부 칙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제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본 당규 제22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9조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생략)	제8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본 당규 제18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제4조제1항에 따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본 당규 제18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 제4조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본 당규 제18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 재직 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 제4조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사회민주당 당규 제11호 제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11호 제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당대표가 추천하고,”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행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제7조에 따라 대표단회의가 정한 시행세칙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새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① (생략)	제1조 (목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구분하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u>대표단회의</u> 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계정과목) ----- ----- ----- <u>최고위원회</u> ----- -----.
제27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생략)	제27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u>당대표가 추천하고</u> ,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 <u>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하고</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사회민주당 당규 제12호 중간평가제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12호 중간평가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표단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부 칙

본 당규는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대표단회의가 추천하는 시도 당위원장 중 1인, 전국위원 중 1인, 전문가, 학계 인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국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② ----- <u>최고위원회</u>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사회민주당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일부개정당규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4조(전국위원회 의제) 제3호”를 “제13조제③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부대표가”를 “최고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대책기구가 구성될”을 “비상대책기구의 장이 선출될”로 한다.

- ②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대표의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 때 나머지 최고위원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 제31조 개정규정은 2026년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긴급동의) ① (생 략)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 며,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u>부대표</u>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생 략)	제18조 (긴급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u>최고위원</u>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안건 철회) 본 당규 제14조(전국위원회 의제) 제3호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 (안건 철회) ----- 제13조제③항----- ----- -----.
제31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①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u>부대표가</u> 부의장 을 맡는다. ② <u>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 때 나머지 부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u>	제31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① ----- ----- <u>최고위원이</u> ---- -----. ② <u>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 대표의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전 국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 때 나머지 최고위원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u>

③ 당규 제5호 제5조(비상대책기구) 제②항에 의하여 소집된 전국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된 1인이 <u>비상대책기구가 구성될 때까지</u> 임시의장을 맡는다.	③ ----- ----- ----- <u>비상대책기구의 장이 선출될</u> -----.
--	---